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http://www.wipo.int/pct/ko)

2020년 9월 | 2020/09 호

## PCT 온라인 세미나 안내

아시아 지역 P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래 주제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Update on Recent and Future Developments in the PCT System

- 일시: 2020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한국 시간)
- 주요 내용: PCT 규칙 개정 사항, ePCT, 코로나 19 관련 업데이트 등
- 진행 언어: 영어
- 참가비: 무료
- 상세 안내: <https://www.wipo.int/pct/en/seminar/webinars/index.html>
- 등록 바로 가기: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948491916694763787>

\* WIPO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세미나와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대한민국 특허청: 2020년 8월 17일 휴무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i)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에 만료되었습니다.

## PCT 정보 업데이트

### 미국 달러(USD)로 납부되는 국제출원료 및 취급료(여러 관청)

2020 년 10 월 1 일부로, 국제출원료, 30 매 초과시 용지당 수수료,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4 번 항목에 나온 전자출원 감면액(해당시), 그리고 취급료의 USD 등가액이 PCT 수수료표(PCT Fee Tables)에 나온 것과 같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동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guide/en/)의 다음의 부속서들에 반영되었습니다.

- 부속서 C (수리관청): AM, AP, AZ, BH, BW, BY, BZ, CL, CR, DJ, DO, EA, EC, EG, GE, GH, GT, HN, IB, IL, IN, JO, KE, KG, KH, KZ, LR, MD, MW, MX, NI, OM, PA, PE, PG, PH, QA, RU, SA, SC, SV, SY, TJ, TM, TT, UA, UG, US, UZ, ZM, ZW
- 부속서 E (국제예비심사기관): CL, EG, IN, PH, RU, US

### IB 국제사무국 (수수료)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다음의 수수료의 USD 등가액이 변동됩니다.

송달료:	.....	USD 109	
우선권서류에 대한 수수료: <sup>1</sup>	.....	USD	54
항공우편 추가요금:	.....	USD	1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IB) 업데이트)

###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2020 년 11 월 1 일부터,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에서 수행하는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CHF 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수수료표 I(c)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업데이트)

##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 PCT 출원인 가이드

PCT 출원인 가이드 중 PCT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국제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및 "국내단계 소개(Introduction to the National Phase)" 부분의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버전이 2020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아래에 각각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www.wipo.int/pct/fr/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fr/guide/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es/guide/index.html) (스페인어)

<sup>1</sup> PCT 규칙 17.1(b)에 따라 우선권서류가 국제출원을 위해 준비된 경우와, 해당 관청이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에서 우선권서류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

“국내단계 소개” 부분의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ru/guide/index.html](http://www.wipo.int/pct/ru/guide/index.html) (러시아어)

“국제단계 소개” 부분의 러시아어 업데이트 버전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 PCT 회의 자료

2020 년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31 차 PCT 기술협력위원회(PCT Committee for Technical Cooperation) 회의 및 제 13 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료를 아래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49) (PCT 기술협력위원회)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850) (PCT 실무그룹)

## 온라인 PCT 세미나 고급과정: PCT 시스템의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통상적으로 WIPO 본부에서 개최되는 WIPO 의 연례 PCT 세미나 고급과정이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PCT 이용자께서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계신 PCT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날짜 및 시간에 세미나를 세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며, 각 지역별로 다음의 날짜/시간(제네바 기준)에 제공됩니다.

2020 년 10 월 14 일(09:00-11:30 CET): 유럽/중동/아프리카 참석자

2020 년 10 월 28 일(16:30-19:00 CET): 아메리카 참석자

2020 년 11 월 2 일(08:30-11:00 CET)<sup>2</sup>: 아시아 참석자

해당 과정은 국제사무국의 경험 많은 직원들이 진행하며, PCT 시스템에 친숙한 특허업무 종사자와 변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규칙 개정사항
- 최근 및 향후 PCT 추가 변동사항
- ePCT: 최근 및 향후 변동사항

각 세미나에는 참석자들이 PCT 에 관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등록수수료가 없으며, 자세한 등록방법은 곧 아래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www.wipo.int/meetings/en/](http://www.wipo.int/meetings/en/)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추가 사항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pct.training@wipo.int](mailto:pct.training@wipo.int)

<sup>2</sup> (역주)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 발행 이후 세미나 시간이 변경되어, 영문판에 나온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 유용한 도움말

###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제 3 자 공개<sup>3</sup>

**Q:**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PCT 제 34 조에 따라 제 국제출원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2 장)가 제 3 자에게 공개되는지, 그렇다면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다른 서류도 제 3 자에게 공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특허협력조약(PCT 제 38 조)에서 국제예비심사 파일이 기밀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예비심사 파일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 2 장)(IPRP(제 2 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라고도 불림)가 작성된 후에는 더 이상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국제예비심사 파일의 제 3 자 공개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의 배경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제 38 조는 국제사무국(IB)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어떠한 자 또는 당국에게도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RP(제 2 장)가 작성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려면 출원인의 청구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IPRP(제 2 장)가 작성된 후에는, IPEA 가 PCT 규칙 71.1(a)에 따라 출원인과 IB 에 사본을 송부하고, IB 가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에 선택관청에 사본을 송부합니다(PCT 제 36 조 및 규칙 73.2(a)). 그러면 선택관청은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열람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94.3).

2004 년 1 월 PCT 규칙 94.1(c)가 발효되어 IB 가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IPRP(제 2 장)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관청에서 IB 가 IPRP(제 2 장)를 PATENTSCOPE ([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http://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는데,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 년 7 월 1 일 발효된 PCT 규칙 71.1(b) 및 94.1(c) 개정사항에 따라,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IPEA 가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접수하거나 작성한 모든 기타 서류도, 우선일로부터 30 개월이 지난 후에 PATENTSCOPE 에 공개됩니다<sup>4</sup>. 모든 IPEA 가 새로운 PCT 규칙 71.1(b)를 시행할 기술적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IB 에 이러한 서류를 송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예비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출원인에게 송부하거나 출원인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는 이제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IPEA 가 출원인과 IB 에 송부하는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실제 서류들 중,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부는 IPRP(제 2 장) 자체에 부속되고, 일부는 따로 송부됩니다.

다음의 서류는 PCT 규칙 70.16 의 규정과 같이 IPRP(제 2 장)에 부속됩니다.

- PCT 제 34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66.8 에 따라 제출된 대체서면과, 이에 수반되는 서신
- PCT 제 19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46.5 에 따라 제출된 대체서면과, 이에 수반되는 서신

<sup>3</sup> (역주) 본 뉴스레터 번역본에서는 편의상 ‘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정보에의 접근(access)에 관한 것으로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와는 구분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up>4</sup> IB 는 파일에 포함된 정보 중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PCT 규칙 48.2(I)에 따라 국제공개에서 생략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음. 이는 파일에 포함된 서류 중 이러한 요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적용.

- PCT 규칙 91.1(b)(iii)에 따라 IPEA 에서 승인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포함하는 PCT 규칙 26.4 에 따른 대체서면과<sup>5</sup>, 이에 수반되는 서신

단, 이러한 대체서면이 후속하는 대체서면 또는 보정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반복되어 PCT 규칙 66.8(b)에 규정된 전체 용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IPRP(제 2 장)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앞서 언급된, 후속하는 대체서면 또는 보정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반복되어 전체 용지가 취소된 대체서면
- 이러한 대체된 또는 반복된 서면과 관련된 모든 서신

이 두 서류는, 해당 대체 또는 반복 보정이 출원 시 국제출원의 공개 범위를 벗어난다고 IPEA 가 간주하는 경우, 또는 보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신이 해당 보정에 수반되지 않았고 IPRP(제 2 장)가 해당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작성된 경우에는 IPRP(제 2 장)에 부속됩니다.

개정된 PCT 규칙 94.1(c)에 따라 IB 는, 2020 년 7 월 1 일이나 그 이후에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IPEA 가 접수하거나 작성한 다음의 서류들의 사본을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PATENTSCOPE 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PCT 행정지침(시행세칙) 신규 섹션 602 의 2 에 나와 있습니다<sup>6,7</sup>.

- IPEA 가 발행한 견해서
- PCT 규칙 66.3 에 따라 출원인이 IPEA 에 제출한, 의견을 포함한 서신(출원인이 IPEA 의 견해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PCT 제 34 조에 따른 보정을 포함한 대체서면 및 해당 보정에 수반되는 서신. 대체된 이와 같은 보정 및 서신 포함.
- IPEA 의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납부 요구
-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 요구 및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한 PCT 규칙 68.3(c)에 따른 이의신청(출원인이 해당 이의신청이 IPRP(제 2 장)에 부속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느냐의 여부와 무관)
- IPEA 가 송부하기를 원하는, 파일에 포함된 기타 서류

IPRP(제 2 장)와 그 부속서류 및 그에 수반되는 서신들 외에, IB 는 PCT 규칙 93 의 2 에 따라 선택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IPRP(제 2 장) 분문의 영어 번역문도 PATENTSCOPE 에 공개합니다(부속서류의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 이는 출원인이 준비하여 해당 선택관청에 송부해야 함).

개정된 규칙은 국제예비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선택관청과 대중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선택관청은 2020 년 7 월 1 일 전에는 IPEA 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던 해당 서류들을 포함해,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PATENTSCOPE 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지역 관청들의 불필요한 업무중복이 사라지면서 국내단계 처리가 용이해지고, 해당 관청들이 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시고 나서 그로 인해 제 2 장 파일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면, IPRP(제 2 장)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sup>5</sup> 정정 요청이 IPRP(제 2 장)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해당 IPRP(제 2 장)는 그와 같이 명시해야 하고, 해당 정정과 관련된 서면은 해당 IPRP(제 2 장)에 부속됨.

<sup>6</sup> [www.wipo.int/pct/en/texts/ai/s602bis.html](http://www.wipo.int/pct/en/texts/ai/s602bis.html)

<sup>7</sup> 특정 상황에서, IPRP(제 2 장)에 부속되는 서류와 별도로 송부되는 서류의 유형이 접칠 수 있음.

그러면 IPEA 는 해당 출원의 처리를 중단하고 IPRP(제 2 장)는 작성되지 않습니다(PCT 규칙 90 의 2.6(c)).

IPRP(제 2 장)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10.074 내지 10.083 및 11.074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IPEA 의 파일 공개에 관한 최근 PCT 규칙 개정사항의 배경에 관한 내용은 아래 문서 PCT/WG/12/12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5263](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435263)

##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 참여

신규 일방향 PCT-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유라시아 특허청과 핀란드)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 휴무일**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일본 특허청

파리협약: 영국의 선언

### **PCT 정보 업데이트**

**AU** 호주 (수수료)

**BG** 불가리아 (수수료)

**CU** 쿠바 (수수료)

**DE** 독일 (서류의 우편송부의 증거,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 출원된 국내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EE** 에스토니아 (전화 및 팩스 번호)

**NL** 네덜란드 (우편주소)

**PT** 포르투갈 (수수료)

**US** 미국 (수수료)

**ZM** 잠비아 (위치, 이메일 주소, 통신수단, 국제형조사 및 임시보호 관련 규정)

조사료 (캐나다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업국(CNIPA),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러시아연방), 미국 특허상표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미국 특허상표청)